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민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75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
발 의 자: 민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남창진, 박상혁, 박춘선,  
소영철, 신동원, 이민석,  
이봉준, 이숙자, 이종태,  
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  
의원(12명)

#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라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'접도율'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·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'6m 미만'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의 주택접도율 요건 산정 시,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을 적용토록 함(안 제6조제1항제2호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나.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(이 경우 주택접도율은 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가. (생략)

나.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 
이하인 지역

다. (생략)

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 
이하인 지역(이 경우 주택  
접도율은 제2조제10호에도  
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  
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 
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  
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 
총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)

다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요건 중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'접도율'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·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'6m 미만'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폭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공공정비계획수립을 통해 기추진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손감소나 재정지출 증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제외함

[출처] 2024년 서울시 예산서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 예산내역
공공정비계획수립	○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= 7,500,000 250,000,000원*30개소 = 7,500,000천원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